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35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박성훈 · 이인선 · 박충권
김기웅 · 신성범 · 정동만
이헌승 · 고동진 · 김성원
박정하 · 서지영 · 김승수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 등에서 그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식탁보의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에 대해서는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탁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현행법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2) 중 “종이냅킨”을 “종이냅킨·식탁보”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0조의3에 따른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위생용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 심의

2.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용품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생용품 관계 공무원

2. 위생용품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생용품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회용 식탁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회용 식탁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 마. (생 략)</p> <p>바. 기타 위생용품</p> <p style="padding-left: 20px;">1)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u>종이냅킨</u>,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p> <p style="padding-left: 20px;">3)·4) (생 략)</p> <p>2. ~ 6.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 ----- ----- -----.</p> <p>가. ~ 마. (생 략)</p> <p>바. -----</p> <p style="padding-left: 20px;">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 --<u>종이냅킨·식탁보</u>----</p> <p style="padding-left: 20px;">3)·4) (현행과 같음)</p> <p>2. ~ 6.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의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0조</u></p>

의3에 따른 위생용품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
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
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위생용품에 관한 연구 및 기
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와 관련
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

<신 설>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 심의
2.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용품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생용품 관계 공무원
2. 위생용품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생용품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